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호서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의 사무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편의에 따라 지부와 지회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회보 연감 및 간행물 발간사업
3. 장학사업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호서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자
2. 천원공업전문대학(전신)을 졸업한 자
3. 상기 대학에서 재학하였던 자로써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점은행제를 4년 졸업한 자

② 준회원은 호서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2년 졸업자 및 대학원 졸업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 교직원 및 모교 과정수료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발언권,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의 무

제7조(임원)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약간의 고문을 둔다.(본회의 역대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30인(회장이 필요시 증원할 수 있다.)
5. 이사 30명 내외(회장, 부회장,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감사 2인
7. 분과위원장

제8조(자문기관) 다음과 같은 자문기관을 둔다.

1. 명예회장은 모교 총장님을 추대한다.
2. 공로가 많은 동문 및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추대할 수 있다.

제9조(임원선출) 임원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부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회는 회장단에서 지역, 기별, 학과 등을 참작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분과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본교 발전에 관한 자문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 의장으로써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장 및 이사 2/3의 요청이 있을 시 본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활동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3년마다 개최하며, 3월 중 회장이 일주일 전에 지상 공고 혹은 개별통지를 통하여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회의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 주인
2. 예산, 결산 보고
3. 기타사항

제14조(이사회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주대
2. 회칙개정
3. 총회에서 위임 및 부의할 제반사항
4. 예산서 및 결산서 심의 승인
5. 사업계획 수립
6.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에 인준할 사항

제 5 장 부 서

제15조(조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국
2. 재무국
3. 조직국
4. 사업국
5. 장학국
6. 홍보국
7. 여성국
8. 문화체육국
9. 대외협력국
10. 발전위원회

다만, 부서의 책임은 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각 부서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17조(책임자) 각부의 책임자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은 일반회무 및 각종 행사 사항을 관장한다.
2. 재무국은 재정사항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조직국은 동문을 하나로 결집하는 사항 및 각급 단위 조직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4. 사업국은 사업과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장학국은 장학업무를 관장한다.
6. 홍보국은 홍보, 회보발행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7. 여성국은 여성동문 역량 결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문화체육국은 예능 및 체육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9. 대외협력국은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0. 발전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제 6 장 지부 및 지회

제19조(구분) 본회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지부와 지회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라 함은 지역단위로 20명 이상 거주하는 동문으로 구성한다.
2. 지회는 직장, 기별, 학과별 등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운영) 본회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1조(기능) 지부 임원은 선출 즉시 임원 및 회원명단, 회칙을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효력발생) 본회의 제6장이 승인되면 모교 신문에 공고하고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장 재 정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동창회비
2. 임원회비
3. 기부찬조금
4. 사업수입
5. 기타수입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수

제26조(보수) 각 부서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책임자 보수) 각 부서 책임자는 무보수로 한다.

제 9 장 상 벌

제28조(포상)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한다.
2. 모교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동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한다.

제29조(징계)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창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공개사과
2. 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
3. 제명

부 칙

- ① (회칙개정) 본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③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11월 30일 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